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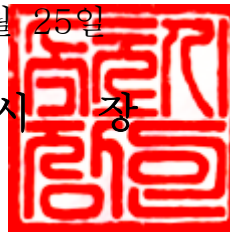
속초시 공고 제2012-591호

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

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속초시 법무행정사무처리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2년 9월 25일

속 초 시 장



1. 자치법규명 : 속초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2.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

『지진재해대책법』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재해에 대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제정 목적을 정함(안 제1조)

나. 지진발생으로 인해 우려되는 적용시설물을 정함(안 제3조)

다. 위험도 평가실시 여부 판단 및 평가단 구성·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
(안 제4조, 제5조)

라.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, 평가 결과보고서 제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
(안 제7조, 제8조)

마.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(안 제10조)

4. 자치법규안 : 붙임

5. 의견제출

가.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2년 10월 16일까지

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(참조: 복구담당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) 주소·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의견제출할 곳 : 우217-030/ 속초시 중앙로 183(중앙동 469-6)

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 복구담당(전화: 033-639-2760, FAX: 033-639-2588

E-mail: tmdgywh462@korea.kr)

라. 의견제출 방법: 서면, 전화, FAX, 시 홈페이지, 직접방문 등

6. 기타

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재난산림관리과 담당자 조효승(전화:033-639-2760)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